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가단14428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

담당변호사 권태운

변 론 종 결 2021. 4. 15.

판 결 선 고 2021. 5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4,986,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5. 7.부터 2021. 5. 2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60%는 원고가, 나머지 4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3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8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8. 10.경 피고가 건축주 8명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용인시 기흥구 C 일대 주택 8채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.

나.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초 220,000,000원(세대당 2,750만 원 × 8, 부가가치세 포함, 이하 같음)에서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242,000,000원(세대당 3,025만 원 × 8)이 되었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84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D 지상 공사대금 중 550만 원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.

라. 한편, 2019. 5. 30.경 원고 측 작업자가 이 사건 공사 중 에어컨 실외기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가 화재(이하 '이 사건 화재'라 한다)가 발생하여, 공사 중이던 주택 중 일부(건축주 E 주택)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.

[인정 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, 8, 11~13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

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6,350만 원(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 5,800만 원 + 기존 미수금 550만)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의 상계 주장 - 38,513,720원 받아들임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의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손해로 추가공사에 들어간 2,390만 원과 건축주 E와 합의를 하여 피고가 포기한 공사대금 잔액 76,168,000원(이 사건 화재로 야기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포함) 등 도합 100,068,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.

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 작업자가 에어컨 실외기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(피고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,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), 그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가 포함된다.

먼저 통상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. 갑 제9호증, 을 제3~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용인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비용 2,390만 원(돌공사 400만 원 + 장비대 50만 원 + 폐기물 처리비 30만 원 + 전기공사 150만 원, 인테리어 1,760만 원)은 적절한 통상손해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¹⁾.

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건축주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금 76,168,000원을 모두 포기한 부분은 이를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통상손해에 그대로 포함시키기는 무리이다. 다만, 피고가 포기하였다는 위 76,168,000원에는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공사가 2개월 정도 지연된 만큼 피고가 건축주 E에게 부담하는 지체상금 14,613,720원(= 총 공사대금 243,562,000원 × 1/1,000 × 60일)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 정도의 금액은 지체상금²⁾을 비롯하여 피고가 건축주 E과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통상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인데,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14,613,720원의 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.

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그 중 38,513,720원(= 2,390만 원 + 14,613,720원)만 받아들인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,986,280원(6,350만 원 - 38,513,720원)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. 5. 7.부터(원고는 2019. 8. 1.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)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. 5. 27.까지는 민법에서

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일부승소(24,986,280원 인용)

판사 맹현무

- 1) 폐기물 처리비, 전기공사,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도 이를 자인한 바 있고(갑 제9호증 참조), 화재 당시 사진을 보면 건물 외벽 석재 등이 상당히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, 돌공사나 스카이라이프대도 통상손해로 인정함
- 2) 원고도 소장에서 화재로 1개월 정도 지연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